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 부 평 가 기 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0. 00.

국 토 교 통 부
00지방국토관리청

I. 일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시행 2020. 6.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7호, 2020. 6. 4.)」에 의하여 평가하되, 상세한 평가기준은 Ⅱ, Ⅲ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본 평가기준에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4.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우리 청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 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 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접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용역업체에 통보하고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2018. 1. 4.)」 제5조에 따른 다음 각목의 점수 이상인 용역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 하며,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 85.71점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87.50점

다.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81.25점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계산은(공동도급 포함) 소수점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공동도급일 경우 각 지분율에 대한 평가점수 합산 후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전차용역 수행 실적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 수급자의 참여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1.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청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서식 15)를 작성한 후 신청서(원본, 부분)에 편철하고 별도로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 제안서(TP) 평가대상 용역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서식 16)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부분) 맨 뒤쪽에 편철하고 별도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3. 공동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배분기준

가.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시행 2020. 6.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7호, 2020. 6. 4.)」에 따라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지분율이 적은 업체도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아래 산정예시를 참고하여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으로 한다.

나. 지분율로 산정한 참여기술인 수는 반올림하여 정한다.

다. 참여기술인은 지분율이 많은 업체에서 먼저 산정하여 참여기술인을 정하고 나머지 기술인은 지분율이 적은 업체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한다.

〈참여기술인 산정예시 : 평가기술인이 7명인 경우〉

지분율(%)		참여기술인(인)		비 고 (±10% 적용시)
A사 (이상)	B사 (미만)	A사	B사	
80	20	6인 (7×0.8=5.6)	1인 (7-6=1)	A사 6인, B사 1인
70	30	5인 (7×0.7=4.9)	2인 (7-5=2)	A사 5인, B사 2인
60	40	4인 (7×0.6=4.2)	3인 (7-4=3)	A사 4인, B사 3인
50	50	4인 (7×0.5=3.5)	3인 (7-4=3)	A사 4인, B사 3인 또는 A사 3인, B사 4인 가능

라.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기준을 두지 않는다. 다만, 참여인원을 최대 20인으로 제한한다.

14. 평가기준의 공고 및 배포는 인터넷(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로 같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같음한다.

1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

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 16.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17.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 18.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19.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II.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

가. 등급

-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시행 2020. 6.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7호, 2020. 6. 4.)」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만, 위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기준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건축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 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당해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적계수의 적용

- (1)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등급, 경력 및 실적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업체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직전 소속업체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1년** 이상 : **1.0**

다. 경력

(1)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의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기간 및 해당분야 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하천 개수를 하거나, 또는 하도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 포함) 근무 경력중 개인 경력증명서에 용역 또는 감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 한다.

(라)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 예시) 2000.1.1. ~ 2000.12.31.(80일) → 80일 적용

(2)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용역(기본계획·실시설계) 경력 및 발주청에서의 하천부문의 설계 경력, 용역감독 또는 용역 관련 관리자 경력 : 100%
* 기본계획이라 함은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대책수립 포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경력평가에 한함) 등을 의미한다. 다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제외함

* “수자원개발분야”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 중 “수자원개발분야”를 말한다.

-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조사용역 및 공사감독(관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과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전, 설계감리 포함) 경력 : 80%

(단, 수자원개발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까지만 인정함)

* 하천오니 준설 사업 제외

-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강의·연구·시공경력(품질·안전 관리 포함), 타당성조사용역, 댐부문의 기본계획 감독·관리 경력 : 60%

* 댐 분야 중 시공, 시공 감독(관리·건설사업관리),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기본계획 중 발전소·후보지 선정의 용역은 제외

(나) 토질·지질,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 하천분야 설계(기본계획,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토질·지질, 토목구조)인 경력 : 100%

- 기타 토목분야 설계용역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토질·지질, 토목구조)인 경력 : 80% (단, 수자원개발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까지만 인정함)

라. 실적

(1) 평가대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용역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지방하천 이상의 수자원개발 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기본계획, 실시설계), 각종 조사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며, 10년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

(나)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및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인정범위

(가) 공고 대상 사업의 용역 금액별로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고,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현재 진행중인 장기 계속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된 용역도 포함하고, 진행중인 용역의 차수준공 인정시 건수는 전체용역비 대비 차수준공분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 만큼 인정한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참여기술인의 실적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경우 참여기술인의 실적금액 **2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경우 참여기술인의 실적금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의 경우 상기 평가기준의 50%만 인정한다.

(나)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용역(기본계획·실시설계) : 100%
 * 기본계획이라 함은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대책수립 포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의미함

(나)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조사용역 : 80%

* 하천오니 준설 사업은 제외

(다)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 중 하천분야 외 (2)인정범위의 (가) 실적금액 이상의 기타(도로, 철도, 단지설계 등) 토목의 설계용역 : 80%

(라)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구분	단일 사업	단일 사업	1년 미만	비고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상주기술인	2.0 건	1.0 건	0 건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	0.2 건	0.1 건	0 건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만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만 인정

(4)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발주기관의 감독 및 관리업무 등 하천부문 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마.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실적

(1)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 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전차용역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 하며 용역수행 정도 및 용역 완성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단, 권역별기본계획의 경우 전차용역연장은 당해 발주용역 구간에 해당하는 하천 연장비율로 적용한다.

※ 기간경과율

3년 미만 : 100%, 3년 이상 5년 미만 : 60%, 5년 이상 10년 미만 : 40%

- (다) 전차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라)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하되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 (마) 금회 설계 연장 중 일부 구간만 전차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 (바) 전차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 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 (사) 전차용역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시) 전차의 사업책임기술인가 평가대상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준공 후 3년 미만)

$$\text{기간경과율}(0.5) \times \text{연장비율} \times \text{과업기간 참여비율} = \text{전차용역실적}$$

바.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 (1) 책임기술인으로서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하여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3)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배점범위 내에서 아래 [참여회사수별 배분율]에 따라 상대 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평가대상

- (1)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으로 준공한 용역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포함), 환경부(홍수통제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국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의 용역사업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용역으로서 지방하천 이상에 대한 계획수립용역,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조사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2)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나. 인정범위

(1) 공통사항

- (가) 공고 대상 사업의 용역 금액별로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 건수 및 실적 금액으로 평가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된 용역도 포함하고, 진행중인 용역의 차수준공 인정시 실적 건수 및 실적 금액은 전체용역비 대비 차수준공분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 만큼 인정한다.

- 당해 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참여사의 실적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당해 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경우 참여사의 실적금액 **2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당해 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경우 참여사의 실적금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나) 용역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자원개발 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용역(기본계획·실시설계) : 100%
- * 기본계획이라 함은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대책수립 포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의미함
-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조사용역 : 80%
- * 하천오니 준설 사업은 제외

- (2)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의 유사용역 실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등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은 용역수행기간에 관계없이 하천분야의 설계만 적용한다.

-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업체의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의 유사용역 실적금액은 발주청의 일괄입찰 안내서에 명시된 소요 추정 공사비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건으로 인정한다.

- (라)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제16장(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따라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자의 80%로 한다.

-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유사용역 실적 금액은 민간투자시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중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공사비(하도정비를 위한 준설공사비와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한 건설업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확인 자료에 의해 산출한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확인자료

- ①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및 설계보상 대상자 확인
- ② 낙찰자 계약금액(설계보상대상자는 낙찰자 계약금액×80%) 확인
- ③ 공사 계약금액 확인

- (3) 일반용역에 대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일반용역이란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의 유사용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유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말한다.

(나) 단일용역에 대하여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사업건수 및 계약금액을 절대평가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절대평가한다.

다.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 하며 용역 완성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기간경과율

1년 미만 : 100%, 1년 이상 3년 미만 : 60%, 3년 이상 5년 미만 : 40%

(3) 전차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전차용역을 공동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지분율로 반영한다.

(5) 금회 설계 연장 중 일부 구간만 전차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6) 전차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 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7) 전차용역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text{기간경과율} \times \text{전차지분율} \times \text{금회지분율} \times \text{연장비율} = \text{전차용역실적}$$

(8) 공동도급 참여시 전차 및 금회 참여지분율 산정방식

적용 예) 금회 공동도급사중 1개사만 전차용역에 참여하고 연장비율이 100%인 경우(준공 후 1년 미만)

전차	금차	적용
A사 70%	A사 50%	70%×50%
B사 30%	C사 50%	= 35% 적용

계산예시) 전차실적 = 100% × 70% × 50% × 100% = 0.35

적용 예) 금회 공동도급사중 2개사 이상 전차용역에 참여하고 연장비율이 100%인 경우(준공 후 1년 미만)

전차	금차	적용
A사 40%	A사 50%	80%×70%
B사 40%	D사 30%	= 56% 적용
C사 20%	B사 20%	

* 전차지분율의 합 : 80%, 금차지분율의 합 : 70%

계산예시) 전차실적 = 100% × 80% × 70% × 100% = 0.56

3. 신용도

가. 업무정지, 벌점

(1) 용역사업자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3)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계산 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 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text{점} \times 0.5) + (0\text{점} \times 0.5) = 0.1 + 0 = 0.1\text{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6)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

-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기술분야 중 토목분야의 경우에만 인정)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최초 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건설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 (3)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4) 최초 출원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5) 공동 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대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 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기술분야 중 토목분야의 경우에만 인정)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신기술을 보호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기술분야 중 토목분야의 경우에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4.1.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4.1.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2) 공동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하되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5. 업무중복도

-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포함), 환경부(홍수통제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 다만,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0호)」 시행일(2014. 5. 23.) 이전부터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되, 시행일 이전부터 진행중인 모든 용역에 시행일 이후 참여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에는 업무중복도 평가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으로 한정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 4. 1.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하여 산정함.

*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함.(실무기술인은 실제 참여 예정인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제출하되 PQ 낙찰자로 선정되어 제출된 PQ 서류와 상이하게 실무기술인을 조정할 경우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원은 **20인**으로 제한하고 기준은 별도 제한하지 않음)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 합계/해당용역 기간×100)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및 사후관리용역에 참여중인 참여기술인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용역 사업 현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자료의 내용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6. 가점

가. 각 업체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업체에 신규로 고용되어 현재 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집행계획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100

* 최근1년간은 집행계획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예) 공고일 2015.6.23. → 최근1년 2014.6. ~ 2015.5.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마.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한다.**

* **기술인 경력은 집행계획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한다.**

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합계		100																							
1.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인	[15]																							
	1)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h>특급기술인</th> <th>고급기술인</th> <th>고급기술인 미만</th> </tr> <tr> <td>3.0</td> <td>2.0</td> <td>-</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3.0	2.0	-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3.0	2.0	-																						
	2) 경력	4	○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h>13년이상</th> <th>13년미만 11년이상</th> <th>11년미만 9년이상</th> <th>9년미만 7년이상</th> <th>7년미만 5년이상</th> <th>5년 미만</th> </tr> <tr> <td>4.0</td> <td>3.2</td> <td>2.4</td> <td>1.6</td> <td>0.8</td> <td>-</td> </tr> </table>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4.0	3.2	2.4	1.6	0.8	-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4.0	3.2	2.4	1.6	0.8	-																				
3) 실적	5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table border="1"> <tr> <th>9건 이상</th> <th>9건 미만 7건 이상</th> <th>7건 미만 5건 이상</th> <th>5건 미만</th> </tr> <tr> <td>5.0(8.0)</td> <td>4.0(6.4)</td> <td>3.0(4.8)</td> <td>-</td> </tr> </table>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0(8.0)	4.0(6.4)	3.0(4.8)	-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0(8.0)	4.0(6.4)	3.0(4.8)	-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0)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관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업무수행범위, 작업계획서,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h>수</th> <th>우</th> <th>미</th> <th>양</th> <th>가</th> </tr> <tr>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able> <p>*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상대평가(5억이상 용역에 해당(3), 5억 미만 용역 비평가(0))</p>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수자원개발 12점, 토질·지질 3.5점, 토목구조 3.5점																							
1)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고급기술인 이상</th> <th>고급기술인 미만</th> </tr> <tr> <td>수자원개발</td> <td>2.0</td> <td>-</td> </tr> <tr> <td>토질.지질</td> <td>1.0</td> <td>-</td> </tr> <tr> <td>토목구조</td> <td>1.0</td> <td>-</td> </tr> </table>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고급기술인 미만	수자원개발	2.0	-	토질.지질	1.0	-	토목구조	1.0	-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고급기술인 미만																					
수자원개발		2.0	-																						
토질.지질		1.0	-																						
토목구조	1.0	-																							
2) 경력	7	○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9년이상</th> <th>9년 미만 7년 이상</th> <th>7년 미만 5년 이상</th> <th>5년 미만</th> </tr> <tr> <td>수자원개발</td> <td>5.0</td> <td>4.0</td> <td>3.0</td> <td>-</td> </tr> <tr> <td>토질.지질</td> <td>1.0</td> <td>0.8</td> <td>0.6</td> <td>-</td> </tr> <tr> <td>토목구조</td> <td>1.0</td> <td>0.8</td> <td>0.6</td> <td>-</td> </tr> </table>				구분	9년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수자원개발	5.0	4.0	3.0	-	토질.지질	1.0	0.8	0.6	-	토목구조	1.0	0.8	0.6	-
구분		9년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수자원개발		5.0	4.0	3.0	-																				
토질.지질	1.0	0.8	0.6	-																					
토목구조	1.0	0.8	0.6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건설기술자	3) 실적	8	○ 용역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9건이상</th> <th>9건 미만 7건 이상</th> <th>7건 미만 5건 이상</th> <th>5건 미만</th> </tr> <tr> <td>수자원개발</td> <td>5.0</td> <td>3.5</td> <td>3.0</td> <td>-</td> </tr> <tr> <td>토질.지질</td> <td>1.5</td> <td>1.2</td> <td>9.0</td> <td>-</td> </tr> <tr> <td>토목구조</td> <td>1.5</td> <td>1.2</td> <td>9.0</td> <td>-</td> </tr> </table>	구 분	9건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수자원개발	5.0	3.5	3.0	-	토질.지질	1.5	1.2	9.0	-	토목구조	1.5	1.2	9.0	-			
	구 분	9건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수자원개발	5.0	3.5	3.0	-																					
	토질.지질	1.5	1.2	9.0	-																					
	토목구조	1.5	1.2	9.0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수자원개발 8점, 토질·지질 3점, 토목구조 3점																								
1)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중급기술인 이상</th> <th>중급기술인 미만</th> </tr> <tr> <td>수자원개발</td> <td>2.0</td> <td>-</td> </tr> <tr> <td>토질.지질</td> <td>1.0</td> <td>-</td> </tr> <tr> <td>토목구조</td> <td>1.0</td> <td>-</td> </tr> </table>	구 분	중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미만	수자원개발	2.0	-	토질.지질	1.0	-	토목구조	1.0	-												
구 분	중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미만																								
수자원개발	2.0	-																								
토질.지질	1.0	-																								
토목구조	1.0	-																								
2) 경력	5	○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4년 이상</th> <th>3년 미만 2년 이상</th> <th>2년 미만 1년 이상</th> <th>1년 미만</th> </tr> <tr> <td>수자원개발</td> <td>3.0</td> <td>2.4</td> <td>1.8</td> <td>-</td> </tr> <tr> <td>토질.지질</td> <td>1.0</td> <td>0.8</td> <td>0.6</td> <td>-</td> </tr> <tr> <td>토목구조</td> <td>1.0</td> <td>0.8</td> <td>0.6</td> <td>-</td> </tr> </table>	구분	4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수자원개발	3.0	2.4	1.8	-	토질.지질	1.0	0.8	0.6	-	토목구조	1.0	0.8	0.6	-				
구분	4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수자원개발	3.0	2.4	1.8	-																						
토질.지질	1.0	0.8	0.6	-																						
토목구조	1.0	0.8	0.6	-																						
3) 실적	5	○ 용역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4건 이상</th> <th>4건 미만 3건 이상</th> <th>3건 미만 2건 이상</th> <th>2건 미만 1건 이상</th> <th>1건 미만</th> </tr> <tr> <td>수자원개발</td> <td>3.0</td> <td>2.4</td> <td>1.8</td> <td>1.2</td> <td>-</td> </tr> <tr> <td>토질.지질</td> <td>1.0</td> <td>0.8</td> <td>0.6</td> <td>0.4</td> <td>-</td> </tr> <tr> <td>토목구조</td> <td>1.0</td> <td>0.8</td> <td>0.6</td> <td>0.4</td> <td>-</td> </tr> </table>	구 분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수자원개발	3.0	2.4	1.8	1.2	-	토질.지질	1.0	0.8	0.6	0.4	-	토목구조	1.0	0.8	0.6	0.4	-
구 분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수자원개발	3.0	2.4	1.8	1.2	-																					
토질.지질	1.0	0.8	0.6	0.4	-																					
토목구조	1.0	0.8	0.6	0.4	-																					
라.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실적	[2]																									
1) 교육훈련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2) 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수자원책임)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경과 기간)에 따라 1.0점 범위에서 평가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구 분</th> <th>용역완료후 3년 미만</th> <th>용역완료후 3년 이상 5년 미만</th> <th>용역완료후 5년 이상 10년 미만</th> </tr> <tr> <td rowspan="2">사업책임</td> <td>사업책임</td> <td>0.5</td> <td>0.3</td> <td>0.2</td> </tr> <tr> <td>수자원책임</td> <td>0.5</td> <td>0.3</td> <td>0.2</td> </tr> <tr> <td rowspan="2">수자원책임</td> <td>사업책임</td> <td>0.5</td> <td>0.3</td> <td>0.2</td> </tr> <tr> <td>수자원책임</td> <td>0.5</td> <td>0.3</td> <td>0.2</td> </tr> </table> <p>※ 전차용역실적 = 기간경과율 × 연장비용 × 과업기간 참여비용</p>	구 분		용역완료후 3년 미만	용역완료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사업책임	사업책임	0.5	0.3	0.2	수자원책임	0.5	0.3	0.2	수자원책임	사업책임	0.5	0.3	0.2	수자원책임	0.5	0.3
구 분		용역완료후 3년 미만	용역완료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사업책임	사업책임	0.5	0.3	0.2																						
	수자원책임	0.5	0.3	0.2																						
수자원책임	사업책임	0.5	0.3	0.2																						
	수자원책임	0.5	0.3	0.2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2.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소 계	15																				
	1) 실적건수	7 (6)	○ 최근 5년간 해당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 건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7.0(6.0)</td> <td>5.6(4.8)</td> <td>4.2(3.6)</td> <td>2.8(2.4)</td> <td>1.4(1.2)</td> </tr> </table>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0(6.0)	5.6(4.8)	4.2(3.6)	2.8(2.4)	1.4(1.2)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0(6.0)	5.6(4.8)	4.2(3.6)	2.8(2.4)	1.4(1.2)																	
2) 실적금액	7 (6)	○ 최근 5년간 해당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 금액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60억원 이상</td> <td>6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td> <td>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td> <td>30억원 미만</td> </tr> <tr> <td>7.0(6.0)</td> <td>5.6(4.8)</td> <td>4.2(3.6)</td> <td>2.8(2.4)</td> <td>1.4(1.2)</td> </tr> </table>	6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7.0(6.0)	5.6(4.8)	4.2(3.6)	2.8(2.4)	1.4(1.2)										
6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7.0(6.0)	5.6(4.8)	4.2(3.6)	2.8(2.4)	1.4(1.2)																		
3) 전차용역수행실적	1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 완료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등)에 따라 1.0점 범위에서 평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구분</th> <th>용역완료후 1년 미만</th> <th>용역완료후 1년 이상 3년 미만</th> <th>용역완료후 3년 이상 5년 미만</th> </tr> <tr> <td>용역사업자</td> <td>1.0</td> <td>0.6</td> <td>0.4</td> </tr> </table> <p>※ 전차용역이 2개 이상 중복 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 상기배점에 공동도급비율 적용 ※ 전차용역실적 = 기간경과율 × 전차지분율 × 급회지분율 × 연장비율</p>	구분	용역완료후 1년 미만	용역완료후 1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사업자	1.0	0.6	0.4												
구분	용역완료후 1년 미만	용역완료후 1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사업자	1.0	0.6	0.4																			
4) 용역수행성과	-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신용도	소 계	10																				
	가. 업무정지, 별점	[7]																				
	1) 용역사업자	4	○ 용역사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3	○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별점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별점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별점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의 점수를 감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누계 평균별점</th> <th>감점되는 점수(점)</th> </tr> <tr> <td>1점 이상 2점 미만</td> <td>0.2</td> </tr> <tr> <td>2점 이상 5점 미만</td> <td>0.5</td> </tr> <tr> <td>5점 이상 10점 미만</td> <td>1.0</td> </tr> <tr> <td>10점 이상 15점 미만</td> <td>2.0</td> </tr> <tr> <td>15점 이상 20점 미만</td> <td>3.0</td> </tr> <tr> <td>20점 이상</td> <td>5.0</td> </tr> </table>	누계 평균별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0	10점 이상 15점 미만	2.0	15점 이상 20점 미만	3.0	20점 이상	5.0						
누계 평균별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0																					
10점 이상 15점 미만	2.0																					
15점 이상 20점 미만	3.0																					
20점 이상	5.0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절대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8</td> <td>2.1</td> <td>-</td> </tr> </table>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																										
	가. 개발실적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2점이 넘는 경우 최대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2.0점/건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수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수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구분</th> <th>5년 미만</th> <th>5년 이상 10년 미만</th> <th>10년 이상</th> </tr> <tr> <td>특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투자실적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1.50% 이상</td> <td>1.50% 미만 1.25% 이상</td> <td>1.25% 미만 1.00% 이상</td> <td>1.00% 미만 0.75% 이상</td> <td>0.75% 미만 0.50% 이상</td> </tr> <tr>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10.0	9.0	8.0	7.0	6.0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10.0	9.0	8.0	7.0	6.0																								
다.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단, 이 경우 입찰공고 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4.1.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4.1.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중건의 기준을 따른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중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h>0.5</th> </tr> <tr> <td>활용건수</td> <td>5건이상</td> <td>5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 3건이상</td> <td>3건미만 2건이상</td> <td>2건미만 1건이상</td> <td>1건미만 0건초과</td> </tr> <tr> <td>활용금액</td> <td>20억원 이상</td> <td>20억원미만 18억원이상</td> <td>18억원미만 16억원이상</td> <td>16억원미만 14억원이상</td> <td>14억원미만 12억원이상</td> <td>12억원미만 10억원이상</td> </tr> </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 하면 인정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0.5	활용건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0건초과	활용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미만 18억원이상	18억원미만 16억원이상	16억원미만 14억원이상	14억원미만 12억원이상	12억원미만 10억원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0.5																						
활용건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0건초과																						
활용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미만 18억원이상	18억원미만 16억원이상	16억원미만 14억원이상	14억원미만 12억원이상	12억원미만 10억원이상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5. 업무 중복도	소 계	10																								
	가. 사업책임 기술인	3	<p>○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중복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0%미만</th> <th>200%~250%미만</th> <th>250%~300%미만</th> <th>300%~350%미만</th> <th>35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책임</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body> </table>	구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사업책임	3.0	2.7	2.4	2.1	1.8											
	구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사업책임	3.0	2.7	2.4	2.1	1.8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p>○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중복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0%미만</th> <th>200%~250%미만</th> <th>250%~300%미만</th> <th>300%~350%미만</th> <th>35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수자원개발</td>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r> <td>토질.지질</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r> <td>토목구조</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body> </table>	구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수자원개발	2.0	1.8	1.6	1.4	1.2	토질.지질	1.0	0.9	0.8	0.7	0.6	토목구조	1.0	0.9	0.8	0.7
구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수자원개발	2.0	1.8	1.6	1.4	1.2																					
토질.지질	1.0	0.9	0.8	0.7	0.6																					
토목구조	1.0	0.9	0.8	0.7	0.6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p>○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중복 비율(단, '19.4.1 이후 계약체결한 사업에 한하여 산정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0%미만</th> <th>200%~250%미만</th> <th>250%~300%미만</th> <th>300%~350%미만</th> <th>35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수자원개발</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r> <td>토질.지질</td> <td>0.5</td> <td>0.45</td> <td>0.4</td> <td>0.35</td> <td>0.3</td> </tr> <tr> <td>토목구조</td> <td>0.5</td> <td>0.45</td> <td>0.4</td> <td>0.35</td> <td>0.3</td> </tr> </tbody> </table>	구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수자원개발	1.0	0.9	0.8	0.7	0.6	토질.지질	0.5	0.45	0.4	0.35	0.3	토목구조	0.5	0.45	0.4	0.35	0.3
구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수자원개발	1.0	0.9	0.8	0.7	0.6																					
토질.지질	0.5	0.45	0.4	0.35	0.3																					
토목구조	0.5	0.45	0.4	0.35	0.3																					
라. 실무기술인	1	<p>○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중복비율 (단, '19.4.1 이후 계약체결한 사업에 한하여 산정함. 공고일기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0%미만</th> <th>200%~250%미만</th> <th>250%~300%미만</th> <th>300%~350%미만</th> <th>35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수자원개발</td> <td>0.6</td> <td>0.54</td> <td>0.48</td> <td>0.42</td> <td>0.36</td> </tr> <tr> <td>토질.지질</td> <td>0.2</td> <td>0.18</td> <td>0.16</td> <td>0.14</td> <td>0.12</td> </tr> <tr> <td>토목구조</td> <td>0.2</td> <td>0.18</td> <td>0.16</td> <td>0.14</td> <td>0.12</td> </tr> </tbody> </table> <p>* 작성지침에 제시된 실무기술인 전체의 중복기간을 합산한 후 실무기술인수로 나눈 값을 차등 평가함. (단, 실무기술인은 20인 이하로 제한함)</p>	구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수자원개발	0.6	0.54	0.48	0.42	0.36	토질.지질	0.2	0.18	0.16	0.14	0.12	토목구조	0.2	0.18	0.16	0.14	0.12
구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수자원개발	0.6	0.54	0.48	0.42	0.36																					
토질.지질	0.2	0.18	0.16	0.14	0.12																					
토목구조	0.2	0.18	0.16	0.14	0.12																					
6. 가 점	소 계	-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p>○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집행계획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100</p> <table border="1"> <thead> <tr> <th>신규고용률</th> <th>3% 이상</th> <th>3% 미만 2% 이상</th> <th>2% 미만 1% 이상</th> <th>1%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0.3</td> <td>0.2</td> <td>0.1</td> <td>-</td> </tr> </tbody> </table>	신규고용률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0.3	0.2	0.1	-													
	신규고용률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0.3	0.2	0.1	-																						
나. 젊은 기술인 참여율	(-)	<p>○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p> <table border="1"> <thead> <tr> <th>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th> <th>5% 이상</th> <th>5% 미만 3% 이상</th> <th>3% 미만 1% 이상</th> <th>1%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0.2점</td> <td>0.15점</td> <td>0.1점</td> <td>-</td> </tr> </tbody> </table>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0.2점	0.15점	0.1점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0.2점	0.15점	0.1점	-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0. 0.

국 토 교 통 부
00지방국토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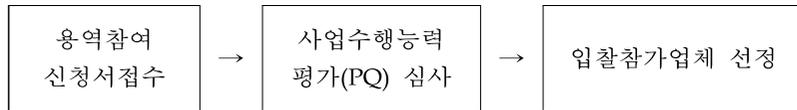
1. 용역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업체 선정

가. 선정방법 : 입찰 참가업체의 선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

나. 선정절차



3. 용역 참여 신청서 작성요령

가. 용역참여 신청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 (1) 크 기 : A4용지
- (2) 제 본 : 좌철
- (3) 제출부수 : 원본 및 부분 각 1부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부분**에 편철하고, 별도로 3부(제본) 제출
 -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서는 원본 및 **부분**에 편철하고, 별도로 6부(제본) 제출

다. 제본순서

- (1) 표지[서식 1]
- (2) 신청공문[서식 2]
-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 (4)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서식 3]
- (5)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4]
-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5]

- (7) 사업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 (8)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 (9)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 (10) 실무기술인 보유증명서
- (11)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6]
- (12)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 (13)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서식 7]
- (14)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8]
- (15)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 (16) 부실벌점 현황[서식 9]
- (17) 재정상태 건실도[서식10]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8) 기술개발 · 투자실적 · 활용실적[서식 11]
- (19)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록 증명서
- (20)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 (21)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
- (22)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2]
- (2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서식 13]
- (24)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신규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신규고용률 확인서
- (25) **젊은기술인 참여[서식 14]**
- (26)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
- (27)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서[서식 15]
- (2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16]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 (2) 제출 기간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4)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5)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 (6)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2018. 1. 4.)」 제8조에 따른다.
- (7) 신청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8)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 (9) 본 평가서류에 기재되는 개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의 기재는 생략한다(예, 601010-1*****)

[서식 1]

접수번호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용역명 : 00강 00지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2020. . .

구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1)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2)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수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사용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1)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2)

업 체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지방국토관리청장
 참조 하천국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구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1)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2)
회사명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사용

-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부분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3.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서 6부 끝.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분담 이행	측량			100%	
	지반			100%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남여구분)	생년월일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술인	()	(만○○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수자원개발						
- 토질·지질						
- 토목구조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수자원개발						
- 토질·지질						
- 토목구조						
○ 실무기술인						20인 제한
- 수자원개발						
- 토질·지질						
- 토목구조						
○ 측량						(비평가)
○ 지반조사						(비평가)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만 세	근 무 부 서	학 위	직 위	비 고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비 고		
기 간	년 월	업 체 명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 월)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	발주청

※ 경력은 자격 취득 시기, 자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 개발분야 책임기술인은 하천분야의 업무에 직접 참여한 경력을 기재하고 기타 전문분야 책임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 경력 전체를 기재하되,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은 하천분야를, 토질·지질 및 구조분야 책임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취하여 작성하여 기재하고, 해당페이지 마지막 행에 해당페이지의 소계를 계산한 후 최종페이지 마지막 행에 합계를 계산한다.(단,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취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같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해당분야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하천분야 중 국가·지방하천 이상의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하되, 단일용역에 대한 평가 대상 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이고 180일 이상 참여한 실적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서 가중치 별로 발취하여 기재(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가중치 별로 소계를 계산한 후 최종 페이지 마지막 행에 합계를 계산하고,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14.5.23 이전에 계약된 용역은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고, 실적조서에 기재한다.(‘14.5.23 이후 계약된 용역의 증명 용으로도 인정함)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하천구분 란에는 하천 등급(국가, 지방)을 기재하고 용역개요 란에는 수행 용역을 상세히 기재한다.(하수급인 경우 비교란에 표기)

※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천부문용역에 참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설계용역 참여기술인만 작성(측량, 지반조사 제외)

※ 실무기술인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은 생략하며 보유증명서만 첨부한다.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고
			. . . ~ . . .	(주)
접수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전차용역 수행 실적(참여기술인)

공동수급업체명	참여기술인	용역명	용역개요			과업기간 (년 월)	발주처	지분율 (%)
			내용	사업량(km) (금회/전차)	계약금액 (백만원)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 기술인이 대하여 평가한다.

※ 전차용역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유역 종합치수계획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하며 용역수행 정도 및 용역 완성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용역개요 란의 내용에는 용역 사업내용을, 사업량은 물량[연장(km) 등]을 기재한다.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용역비에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한다.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교란에 원수급 업체

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한다.(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 전차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전차용역이 공동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지분율로 반영한다.
- ※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 분야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하되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 ※ 금회 설계연장 중 일부구간만 전차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 ※ 전차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6]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년도	용역명	하천구분	과업개요	과업기간 (년 월)	계약금액 (천원)	발주청	지분율 (%)	비고
1					. . . ~ . . . (년 월)				
2					. . . ~ . . . (년 월)				
소계		건				천원			
계		건				천원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 및 180일 이상 수행한 용역사업에 한하며, 현재 진행중인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된 용역도 포함하되, 진행중인 용역의 차수준공 인정시 실적 건수 및 실적 금액은 전체용역비 대비 차수준공분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 만큼 인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서 가중치 별로 발취하여 기재(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 가중치 별로 소계를 계산한 후 최종 페이지 마지막 행에 합계를 계산하고,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다.

다만, '14.5.23 이전에 계약된 용역은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조서에 기재한다.(‘14.5.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의 증명용으로도 인정함)
- ※ 년도란에는 “. . . ~ . . .”로 기재한다.
- ※ 하천구분 란에는 하천명과 그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을 기재한다.
- ※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은 용역기간에 제한이 없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1건으로 기재한다.
-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연장(km) 및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한다.

-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용역비, 도급률에 공동수급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한다.(비고란에는 공동도급자명, 연장(km)을 기재)
-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업체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한다.(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용역현황 관리기관이 확인(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 확인 추가)한 증빙서류(원본)를 첨부한다.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7]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공동 수급 업체명	용역명	용역개요			과업기간 (년 월)	발주청	지분율 (%)
		내용	사업량(km) (금회/전차)	계약금액 (백만원)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 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 전차용역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유역 종합치수계획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하며 용역수행 정도 및 용역 완성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 용역개요란의 내용에는 용역 사업내용을, 사업량은 물량[연장(km) 등]을 기재한다.
-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용역비에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한다.
-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업체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한다.(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 전차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전차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기성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 전차용역이 공동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지분율로 반영한다.
- ※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 분야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하되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 ※ 금회 설계연장 중 일부구간만 전차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 ※ 전차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용 업 자			. . . ~ . . . (월)				
			. . . ~ . . . (월)				
	계						
참 여 기술인			. . . ~ . . . (월)				
			. .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별점점수 (점)	누계 평균 별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용 업 자							
	소계						
참 여 기술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별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별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별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별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별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별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재정상태 건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기술개발·투자실적·활용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토목분야와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 실용신안 등)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한다.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한다.

※ 비교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한다.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투자실적

공동수급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A	B	A/B	A	B	A/B		
			(a)			(b)			(c)		
										$[(a+b+c)/3] \times \text{참여지분율}$	
										$[(a+b+c)/3] \times \text{참여지분율}$	
										$[(a+b+c)/3] \times \text{참여지분율}$	
계											

-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다.
-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한다.
-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한다.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한다.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다.
- ※ 업체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업체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한다. (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 신기술					
	소 계				
특허 및 실용신안					
	소 계				
계					

- ※ 필요유무에 관계없이 작성한다.
- ※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한다.
-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한다.
-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한다.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업 책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임 기술인	수자원 토질..								
		소계	건						
분야별 참여 기술인	수자원 토질..								
		소계	건						
실무 기술인	수자원 토질..								
		소계	건						
	합계								

- ※ 참여기간은 당해 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한다.
- ※ 국토교통부(지방국토청 포함), 환경부(홍수통제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 합계/해당용역 기간×100)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전(全)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참여중인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
-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한

어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은 '19. 4. 1일 이후 계약체결 한 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 ※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에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설계사업 전체) 첨부한다.)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 업무중복도 작성양식은 파일로 별도로 제출한다.(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

[서식 1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년, 월	건설기술인 보유인원 수	신규고용 인원수	비고
'15.1월			
'15.2월			
⋮			
'15.12월			
계	합계	000명	00명
	월 평균	00명	

※ 각 업체별 건설기술인 보유인원수는 공고일 기준 전월부터 1년간 월단위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자료를 첨부한다.

예) 공고일 2015.6.23. → 최근1년 2014.6. ~ 2015.5.

※ 신규기술인은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가점은 미반영한다.

[서식 14]

젊은기술인 참여

○ 젊은기술인 참여현황

성명	소속	근무기간	근무경력	비고
		'00.00.00~'00.00.00	년 개월	
계		'00.00.00~'00.00.00	년 개월	

○ 젊은기술인 참여율

당해 용역 전체 참여 기술인수 [㉠]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수 [㉡]	젊은기술인 참여율 ([㉠] / [㉡] ×100)	비고

※ 젊은기술인 참여현황은 총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인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근무한 건설기술용역업체마다 경력을 작성하여 합산한다.

※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자료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가점은 미반영한다.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서

[○○ 용역]

2019. .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집행계획 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 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호안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수자원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 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3. 경력증명서를 첨부

※ 서식 15번은 6부를 제출하되, 1부는 표지에 업체명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5부는 표지에 업체명을 지워서 제출한다.

※ 흑백으로 작성한다.

※ 본 서식에 책임기술인의 경력증명서는 6부 모두 미첨부 한다.

[서식 16]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1. 평가 내역

□ 업체명 : (주)A엔지니어링(%), (주)B엔지니어링(%), (주)C엔지니어링(%) (측량분야) D엔지니어링, (지반조사분야) E엔지니어링

평가항목		업체명 (A)		업체명 (B)		업체명 (C)		비고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참여 기술인	구분	성명	자격	경력	실적		전차용역 (건수)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			년 월			건	회사명
		토질,지질			년 월			건	
		토목구조			년 월			건	
	분야별 참여 기술인	수자원			년 월			건	
		토질,지질			년 월			건	
		토목구조			년 월			건	
	교육 훈련 (인)	대상인원	1주이상 교육훈련이수자		2주이상 교육훈련이수자				
용역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수	A사				건		
			B사				건		
			C사				건		
			계				건		
	금액	A사					백만원		
		B사					백만원		
		C사					백만원		
계					백만원				
전차용역	회사(월)	완성후 기간							
	금회참여지분	%							
	전차참여지분	%							
	책임분야종류								
	기술인 기간 (월)	사업책임기술인	기간(월)	수자원책임기술인	기간(월)				
...			...						
...			...						
...			...						

신용도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성명		개월수			
		임차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월)	구분		성명		개월수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참여기술인	수자원							
		토질,지질							
		토목구조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등급		A사	B사	C사	적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							
부실별점	대상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수자원	토질 기초	토목 구조	수자원	토질 기초	토목 구조	
	부실점수								
적용점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점)	구분		A사	B사	C사	소계		
		신기술		점	점	점	점		
		특허		점	점	점	점		
		실용실안		점	점	점	점		
	투자실적 (억원)	구분		A사	B사	C사	실적비율		
		건설투자액(최근3년)						%	
		총매출액(최근3년)							
	활용실적	구분		A사	B사	C사	적용실적		
		신기술		점	점	점	점		
		특허		점	점	점	점		
실용신안		점	점	점	점				
업무중첩도	구분		성명		건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별 책임	수자원						개월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별 참여	수자원						개월	
		토질,지질							
		토목구조							
	실무	수자원		인원수		합산 건수		개월	
		토질,지질							
토목구조									
가점	신규고용률		최근1년간 신규고용 인원수		건설기술인 보유인원수		고용률(%)=(신규 고용인원수/최근1년간 월평균)		
			현재 고용 인원수		최근1년 월평균 고용 인원수				
	젊은기술인 참여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		참여율(%)=(5년 미만 기술인/전체 참여인원수X100)		

2. 집계 현황

□ 업체명 : (주)A엔지니어링(%), (주)B엔지니어링(%), (주)C엔지니어링(%)
(측량분야) D엔지니어링, (지반조사분야) E엔지니어링

		평가항목	배점	산출근거	점수	비고	
신용도	사업책임 기술인 (15)	소계	15	성명			
		자격	3				
		경력	4	○년 ○월			
		실적	5(8)	○건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			
			소계	19	성명/성명/성명		
	자격	소계	4				
		수자원	2	자격			
		토질,지질	1	자격			
	경력	소계	7				
수자원		5	○년 ○월				
토질,지질		1	○년 ○월				
토목구조	소계	1					
	수자원	8					
	수자원	5	○건수				
토질,지질	토질,지질	1.5	○건수				
	토목구조	1.5	○건수				
	소계	14	성명/성명/성명				
자격	소계	4					
	수자원	2	자격				
	토질,지질	1	자격				
토목구조	소계	5					
	수자원	3	○년 ○월				
	토질,지질	1	○년 ○월				
토목구조	소계	1	○년 ○월				
	소계	5					
	수자원	3	○건수				
토질,지질	토질,지질	1	○건수				
	토목구조	1	○건수				
	소계	2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2)	교육훈련	1					
	전차용역 수행실적	0.5	사업책임				
	수자원분야책임	0.5	수자원분야책임				

평가항목		배점	산출근거	점수	비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소 계		15		
	회사실적	실적건수	7(6)	○건	
		실적금액	7(6)	○백만원	
	전차용역	용역사업자	1		
용역수행성과		- (2)	()용역성과평가 시		
신용도 (10)	소 계		10		
	업무정지 부실별점	용역사업자	4	○월	
		참여기술인	3	○월	
		부실별점	-		
제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소 계		15		
	개발실적	신기술	2	○점	
		특허		○점	
		실용신안		○점	
	투자실적		10	○건 (○억원)	
활용실적		3	○%		
업 무 중복도 (10)	소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3	○개월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2	○개월	
		토질.지질	1		
		토목구조	1		
	분야별 참여기술인	수자원개발	1	○개월	
		토질.지질	0.5		
		토목구조	0.5		
	실무기술인	수자원개발	0.6	○개월	
		토질.지질	0.2		
토목구조		0.2			
가점	소 계		-		
	신규고용률	신규고용인원수	-	0명	
		월평균고용인원수	-	00명	
	젊은기술인 참여율	젊은기술인 참여인원수	-	0명	
전체 참여인원수		-	00명		
합 계		100			